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451
------	-----

2023. 3. 10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2월 2일, 박칠성 의원(찬성자 33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】

-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3.3.3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박칠성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 및 재난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가하는 지역 축제를 친환경, 에너지 및 자원 저감형, 온실가스 배출 저감형 축제로 유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이 지역 축제를 지원을 하는 경우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

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지향하는
축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6조제2항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조에
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서울시 축제에 적용하여 친환경, 에너지
및 자원저감형, 온실가스 배출 저감형 지역축제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
되었음.

나.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 현황

-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전지구적인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파리협정
(2015.12.)을 시작으로 주요국 탄소중립·온실가스 감축목표(NDC:
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)상향 등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
실질적 중립 상태로 이행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
국제적인 정책의 새로운 개념임.
- 2022년 정부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‘탄소
중립,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’을 비전으로 삼고, ▶ 책임있는 실천,
▶ 질서있는 전환, ▶ 혁신주도 탄소중립·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을
제시한바 있음.

-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「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(2022.07.11.)를 제정하고 ‘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를 출범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다. 탄소중립·녹색성장 축제 시 우선적 지원(안 제16조제2항)

- 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서울시 축제의 경우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축제란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▶문화예술 향유 ▶관광 진흥 ▶시민화합 ▶문화의 다양한 가치 구현 ▶전통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적·예술적·민속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.
-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, 녹색성장을 추구해야 함은 이해되나, 개정안과 같이 탄소중립·녹색성장 지향 축제를 우선 지원 규정의 신설은 문화적으로 우수한 축제를 육성·지원하려는 동 조례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- 또한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9조제1항¹⁾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의 대상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한정되어 있어 개정안과 같이 축제 등의 일반사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한계점도 존재함.

1)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9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같은법(제59조제2항²⁾)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축제 지원에 지급되는 지방보조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보기 어려움.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탄소중립·녹색성장 축제에 우선적 지원 규정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.
- 또한 ‘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’로 규정할 경우 문화예술분야가 아닌 특정 목적의 축제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.
-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‘[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]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’로 탄소중립 사회와 녹색성장을 지향하도록 서울시 축제의 지원·육성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안드립니다.

< 개정안 수정의견 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생략) <신설> ② (생략)	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	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2)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9조 ②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9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문화적·예술적·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를 발전시켜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축제·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‘탄소중립·녹색성장’ 관련 축제를 우선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.
- 다만, 향후 서울시 축제 운영에 있어 ‘탄소중립·녹색성장’을 지향하는 정책 마련의 당위성은 인정되므로, 이를 선언적 규정으로 반영하고자 함.

나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서울시 지원 축제가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지향하도록 수정함
(안 제16조제2항).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(생 략)	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	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